

## 아연필(주)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

### 입찰 공고서 [물품]

#### ☐ 사업 개요

- 사 업 명 :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
- 물 품 명 : 폐펜저감 펜 조립선별회수장치
- 납품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 월 30일
- 소요예산 : 144,000,000원 ( 부가가치세 별도)
- 공고기간 : 2026년 09월 2일 ~ 2026년 09월 14일
-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: 2026년 09월 14 일 10: 00
- 개찰 일시 : 2026년 09월 14 일 11: 00
- 서류 제출 및 개찰 장소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
-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: 나라장터

#### ☐ 사업 내용

- 동아연필(주)은 폐펜저감 펜 조립선별회수장치로 교체함으로써,  
폐기물 발생 절감하고자 함.

#### ☐ 사업 구성

| 구 분 | 내 역                    | 규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액 ( VAT별 도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물품  | 폐펜저감 펜<br>조립선별회수<br>장치 | 1) Driving Method : BARREL CAM<br>Methed<br>2) Capacity : 80 Pcs / Min<br>3) Frame 6,400W *1,000D *680H 외 | 144,000,000원 |



-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: 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「 ( 계약예규) 물품구매( 제조) 입찰 유의서」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및 제출자료에 기재된 메일 접수를 필수로 함.

## □ 입찰보증금 납부

- 가. 납부금액 :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
- 나. 납부방법 : 현금, 보증서 등 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수단
- 다. 납부기한 :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: 00까지
- 라. 납부면제 :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.
- 마. 면제 제외 대상 :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미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없음.
- 바. 발주처 귀속 :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에 따라 면제받은 입찰보증금 ( 입찰금액의 5% 상당액) 을 동아연필(주)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.

## □ 불공정행위 금지

-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(이하 이 조에서는 “입찰자 등” 이라 한다)는 입찰, 낙찰, 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.

1. 금품·향응 등의 공여·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2.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
3.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·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4. 하수급인 또는 자재·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
5.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

-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·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·해제될 수 있고,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

법률」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-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.
-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“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불공정행위 신고처 : 오경균 팀장 [kk\\_oh@edongapen.com](mailto:kk_oh@edongapen.com)